

1. 폐지이유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규정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은 실효성을 상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심사 예정

교육부령 제 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